

해임처분 취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원명	서울고등법원
사건번호	2019누○○○○○	사건유형	공무원신분
원고	○○○	피고	인천광역시교육감
판결선고일	2019. 5. 23.	비고	(1심)인천지방법원 2018구합○○○○○ 2019. 2. 14. 원고패소
사건개요	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로 지낸 원고에 대해, 인천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8.02.22.자 해임 처분을 하였고, 이에 불복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하였으나 2018.05.09.자 기각되자 징계권의 일탈·남용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함.		
주 문	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		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	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8. 2. 20.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.		
판결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심 판결서의 이유의 기재와 같아, 이를 인용함. ○ 이 사건 처분이 징계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고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수개월간 지속하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행위를 함. - 「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 [별표]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‘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’에 해당되는 것으로서, 원고에 대한 해임은 징계기준에 부합함. - 원고가 이 사건 이전까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하나, 원고의 행위가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으로 보이는 이상, 그에 상응하는 징계로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. 		
결 론	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		